

 <p>거창군 Geochang County</p> <p>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</p>	<h1 style="font-size: 48px; margin: 0;">공 보</h1> <p style="font-size: 24px; margin: 0;">제869호 2022. 7. 27.(수)</p>	
---	---	---

선 결	기관의 장

고 시

거창군 고시 제 2022-81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고시 2

거창군 고시 제 2022-82호 도로명주소 고시 3

회 램									
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거창군 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☎055-940-3043)

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<http://www.geochang.go.kr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거창군 고시 제2022-81호

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고시

『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』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.

2022년 7월 20일

거창군수

1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현황

저수지명	위 치	규 모				정비완료일
		총저수량 (천㎥)	길이 (m)	높이 (m)	수혜면적 (ha)	
내오	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16번지	6	41	5	4	2022. 4. 8.

2. 지정해제 사유 :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완료

3.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: 경상남도 거창군 건설과(☎055-940-3543)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7. 27.

거창군수

○ 도로명주소 고시대상

- 건물번호 부여 :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당산말길 42-30 등 6건
- 건물번호 폐지 :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479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 (변경·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